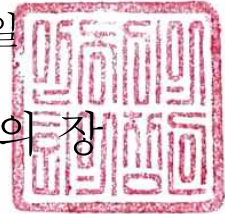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55호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안동시의회 의장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시행(2022. 1. 13.)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조항 삭제(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8.(5일 이상)

4. 의견제출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21년 12월 8일까지 안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

1) 전자우편 : flora99@korea.kr

2) 주 소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의회

3) 팩 스 : 054-840-64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62조</u>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특별위원회) ① (생략)</p> <p>③의회는 의원의 <u>윤리심사</u> 및 <u>징계자격</u>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u>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u></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64조 및 제71조-----</p> <p>-----</p> <p>-----</p> <p>-----</p> <p>---.</p> <p>제7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③----- <u>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u>-----</p> <p>-----</p> <p>---.</p> <p><u><삭제></u></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